

의안번호	2216509
의 퇴 인	송재봉의원
회 답 일	2026.3.11.
추 계 번호	26B0625

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5조의2제2항 제4호 신설 (산업입지수급계획 등)	제1항에 따른 산업입지수급계획 수립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(제2항) 4. 준산업단지 공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	의무규정
2	안 제8조의3제3항 및 제4항 신설 (준산업단지의 지정)	준산업단지의 지정권자는 준산업단지의 원활한 공급 및 효율적인 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용도지역의 변경을 통해 용적률을 완화하여 준산업단지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(제3항 신설)	재량규정
		준산업단지는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상 공업지역, 계획관리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(이하 "지정지역"이라 함)에 한하여 지정할 수 있음. 다만,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생산관리지역, 보전관리지역, 농림지역(「농지법」에 따른 농업진흥지역, 「산지관리법」에 따른 보전산지 및 「초지법」에 따른 초지는 제외한다) 또는 녹지지역을 포함하여 준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음(제4항 신설)	재량규정
3	안 제45조제1항(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)	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업단지 및 준산업단지 원활한 조성 및 육성, 중소기업용 산업용지 임대사업(제46조의6에 따른 임대전용산업단지를 포함한다)의 육성을 위하여 「조세특례제한법」·「관세법」·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·소득세·관세·취득세·등록면허세·농어촌특별세·재산세·교육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음(제1항)	재량규정

II 미첨부 근거규정 및 상세사유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규정
1	안 제5조의2제2항제4호 신설 (산업입지수급계획 등)	•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8조의3제3항 및 제4항 신설 (준산업단지의 지정)	
3	안 제45조제1항 (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)	

2. 상세사유

가. 산업입지수급계획 수립지침(안 제5조의2제2항제4호 신설)

-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는 산업입지수급계획 수립지침에 준산업단지 공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, 이 지침에 따라 준산업단지 지원사업이 시행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 - 그런데 개정안은 계획 수립단계에서 준산업단지 공급 및 지원을 위한 지침에 반영하도록 절차를 정비하는 내용으로, 구체적인 지원내용과 사업규모는 향후 수립될 단지별 사업계획에 따라 확정될 사항으로, 현시점에 추가 재정소요를 추산하는 데 한계가 있음

나. 준산업단지의 지정(안 제8조의3제3항 및 제4항 신설)

- 개정안은 준산업단지의 지정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준산업단지의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용적률을 완화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, 준산업단지 지정 가능 지역을 공업지역·계획관리지역·개발진흥지구 외에 생산·보전관리지역·농림지역·녹지지역까지 확대하고 있음
 -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의 용적률 완화로 인해 기반시설 수요가 증가하거나, 지정 지역 확대로 전체적인 준산업단지 수가 늘어날 경우, 동법 제28조 및 제29조¹⁾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기반시설 설치비 보조 및 개발사업비가 추가될 수 있음
 - 그런데 지정권자가 용적률 완화를 적용할 지역 면적, 용적률 완화로 추가 설치되어야 할 기반시설의 종류, 규모, 공사범위 등이 현시점에 불확정적

1) 제29조(기반시설 지원)

- ① 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항만·도로·용수시설·철도·통신·전기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해당 시설을 공급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지원한다.
- ② 제1항에 따라 기반시설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단지를 말한다.
 - 1.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낙후지역 개발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산업육성이 필요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에 개발 중인 산업단지
 - 2. 심의회에서 산업입지정책에 따라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단지
- ③ 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④ 제1항에 따른 지원 규모, 지원방법 등 기본적인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.

이어서 관련 비용을 합리적으로 추산하는 데 한계가 있음

- 다만,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준산업단지 지정 현황은 [참고자료]에서 확인할 수 있음

다. 조세감면(안 제45조제1항 신설)

- 개정안은 조세감면 대상에 준산업단지를 추가하여 「조세특례제한법」과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등에 따른 법인세·취득세·재산세 등 감면 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감소가 발생할 수 있음
 - 그런데 개정안에 따른 조세감면의 구체적인 범위와 세목, 감면율은 개별 세법의 개정을 통해 결정될 사항이고, 실제 세수 감면 규모는 향후 준산업단지의 지정 현황, 준산업단지의 수·면적·개발 규모, 입주기업 현황 및 과세표준 등에 따라 확정되므로 현시점에 관련 세수 감소 규모를 추산하는 데 한계가 있음
-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개정안에 따른 재정소요의 변화를 현 시점에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

IV. 부대의견

- 해당사항 없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문지은	예승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문지은	02-6788-4645	mtsophia@assembly.go.kr

[참고자료] 준산업단지 지정 현황 및 해제 현황

국토교통부 제출자료

□ 경기도 2개소(315천㎡, 화성 2)

지구명	시군명	세부주소	상태	지정 연도	해제 연도	사업기간	면적 (천㎡)
양감	화성	양감면 사창리 52-3번지 일원	조성 중 (분양 완료)	2010	—	2011~2026	220
하저	화성	팔탄면 하저리 287-19번지 일원	조성 중	2010	—	2011~2026	95
지구명	시군명	세부주소	상태	지정 연도	해제 연도	해제·중단 원인	면적 (천㎡)
율암	화성	팔탄면 율암리 488-1번지 일원	지정 해제	2010	2011	개발 전망 없음	126
덕우	화성	팔탄면 덕우리 226-14번지 일원	지정 해제	2012	2015	개발 전망 없음	185
구장	화성	팔탄면 구장리 127-78지 일원	지정 해제	2010	2017	개발 전망 없음	213
북양	화성	남양읍 북양리 500-70번지 일원	지정 해제	2010	2017	개발 전망 없음	273
웅정	김포	통진읍 웅정리 산 18-1번지 일원	지정 해제	2015	2018	실시계획 미신청	184

자료: 국토교통부 제출자료